##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15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박상혁 · 김남근 · 정일영

최기상 · 임호선 · 김현정

김병기 · 김선민 · 한민수

이연희 · 김남희 · 이인영

이기헌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의2 및 제5호"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
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제3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
26년 이후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5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제5호는 자산</u>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
	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혼)
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반	

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 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 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 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 3호의2는 제외한다) · 제4항 ·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반기보고서에 대하	
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u>분기보고서</u>	
<u>제3호·제3호의2 및 제5호</u>	